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에 대한 反省

李 正 浩

<目 次>

- I.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제정과 그 후의 動向
- II. 「企業會計原則」의 性格과 全般的 體系
- III. 「企業會計原則」과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의 關係
- IV.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의 共通的 問題點

I.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제정과 그 후의 動向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1958年 7月 2日에 財務部 告示 第169號로서 發表된 「財務諸表原則」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를 指導할수 있는 原理로서 會計原則의 諸多性을 認識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 「財務諸表原則」은 會計行為의 具體的인 指針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規則이나 指針을 制定하는 基礎原理로서의 會計原則이 없어서는 아니 되었다. 이와같은 要請에 따라 당시 財務部長官의 諮問機關으로 있던 財政金融委員會내에 企業會計準則制定分科委員會를 두어 企業會計原則의 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57年 11月初에 上記한 分科委員會는 「企業會計原則」(처음에는 企業會計準則이라 불렸다)을 起草할 起草小委員으로서 8名과 幹事 2名을 選出하여 同年 12月 6日부터 每週 金曜日마다 銀行集會所에 모여 6個月餘의 努力 끝에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을 제정하는 방대한 作業을 끝마치었다.

이와같은 會計諸則이 제정된 당시의 우리나라 經濟는 6.25動亂의 막심한 異常를 어느 程度 회복하고 安定期에 접어 들고 있었으나 企業會計制度는 發達되지 못한태다가 統一되지 못하고 未備한 점이 많아 企業의 經營成果와 財政狀態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困難한 실정에 있었다. 이와아울러 政府에서는 經濟復興을 至上課業으로 삼고 企業의 合理化를 촉진하는 동시에 外資의 導入, 企業의 健全化, 租稅의 公正化, 證券投資의 民主化, 金融의 適正化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副教授。

* 本稿는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結果임。

등 당시 긴급히 추진해야 할 문제가 山積되어 있었었다. 이와같은 問題를 合理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와같이하여 제정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은 그동안 우리나라 企業에 近代的 會計方法을 보급하고 會計實務의 質的 水準을 높이는데 크게 寄與하였으며 특히 商企業과 製造企業의 財務諸表作成에 있어서 統一을 期하는데 많은 貢獻을 하였음을 疑心치 않는다.

會計原則은 會計行爲의 規範으로서 實踐基準으로서의 性格을 갖고 있다. 그리고 會計原則은 또한 企業環境과 經濟與件의 變화에 따라 새로이 整備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이 成文化된 뒤 15年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 까지 商法改正에 따른 1964年 5月 27日 「財務諸表規則」의 用語修正 이외에 아무런 改正이 없었던 것은 會計原則의 중요성이 얼마나 경시되어 왔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다.

1973年 8月에 財務部의 證券審議委員會 奉下 企業會計制度審議分科委員會는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을 내 놓았다. 改正案을 提示하게 된 直接的인 動機는 1972年에 實施된 8.3 經濟措置 이후에 제정 공포된 企業公開促進法(1972年 12月 30日)과 1968年에 제정 공포된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이 改正(1972年 12月 30日)됨에 따라 앞으로 增加될 上場法人과 이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動機에서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이 마련 되었음인지 이곳에서는 會計原則이 法的 強制力を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會計原則을 法的 強制력을 갖는 것으로 規定한 根據는 證券去來法에 의하였던 것으로 同法 第126條 第8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上場法人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者의 會計와 公認會計士의 監查에 統一性과 客觀性을 賦與하기 위하여 第126條의 규정에 의한 證券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의 原則을 大統領敘으로 定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 會計處理의 原則”은 모든 企業의 會計實務를 指導하는 原理로서의 原則이라고 하기 보다는 上場法人과 同法의 적용을 받는 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會計 指針’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會計原則은 理論으로서의 普遍妥當性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또 모든 企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會計行爲의 基準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企業會計原則改正案」에서 規定된 바와 같이 特定企業에 대한 會計行爲의 指針을 會計原則과 同一視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 이 會計原則과 같이 普遍妥當性을 갖는 原理를 法制化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

일 證券去來法에 따라 모든 企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會計原則을 제정하게 된다면 이는 利害關係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集團과 관련시켜 볼때 公正性을 상실하고 말게된다. 1973年 9月 1日에 있었던 「企業會計原則改正案」에 대한 公聽會에서의 上述한 바와같은 批判이 있어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이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이란 名稱으로 修正되어 閣議를 通過하여 大統領令(第7199號)으로 公布(1974年 7月18日)하게 된것은 會計原則을 誤導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일단 多幸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초에 意圖하였던 「企業會計原則」의 改正作業이 아무런 進前을 보지 못한 結果가 되었다. 따라서 많은 矛盾點을 갖고 있는 「企業會計原則」은 하루 속히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II. 「企業會計原則」의 性格과 그 全般的體系

1958年に 제정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1949年 日本의 企業會計審議委員會(당초의 名稱은 企業會計制度對策調查會)가 발표한 企業會計原則에 支配的인 影響을 받고 成文化된 것이다. 그런데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原型을 이루고 있는 것은 美國의 SHM 會計原則이고, 이에 美國會計學會(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AA)의 1948年 改正會計原則과 獨逸의 이에 商法學者들이 들고 있는 貸借對照表의 諸原則을 가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볼때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직접적으로는 日本의 影響을 크게 받았고 간접적으로는 美國과 獨逸의 學問의 成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企業會計의 實務속에서 발달된 諸原則가운데서一般的으로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企業會計原則」은 會計慣習을 그의 形成母體로 하고 이것으로부터 歸納된 實踐規範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企業會計原則」은 “一般的으로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公正妥當’하다고 하는 判斷根據를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 會計公準을 前提로 하여 會計目的으로 부터 演繹된 理論規範으로서의 性格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企業會計原則」은 “반드시 法令에 의하여 強制되지는 않더라도 모든 企業이 그 會計를 處理함에 있어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基準이 된다. 그러므로 「企業會計原則은 法律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法的 強制力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會計原則의 規範에 따라 그 實質的인 內容이 特定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컨대 財務諸表規則과 같은 형식으로 具體化 될 경우에는) 法的 強制力を 賦與할 수도 있다. 한편 「企業會計原則」은 會計行爲의 ‘公正妥當’한 判斷基準이 되도록, 商法・稅法등 會計와 관

법이 있는 諸法令이 改廢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뜻에서도 「企業會計原則」은 會計實務에 있어서 最善의 길을 案內하여 줄 수 있는 基準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會計原則」은 기본적으로 財務諸表를 作成하여 報告하기 위한 基準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主要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1. 一般原則
2. 損益計算書 및 剩餘金計算書에 관한 原則
3. 貸借對照表原則

여기서 一般原則은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등 財務諸表를 作成 報告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原則을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의 각 原則은 一般原則을 준수하면서 각각의 會計報告書를 作成할 경우에 따라야 할 基準인 것이다.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一般原則

1. 真實性의 原則
2. 正規簿記의 原則
3. 重要性의 原則
4. 確實性의 原則
5. 繼續性의 原則
6. 剩餘金區分의 原則
7. 安全性의 原則
8. 明瞭性의 原則
9. 單一性의 原則

(2) 損益計算書原則

1. 發生主義
2. 實現主義
3. 總額主義
4. 費用・收益의 對應

(3) 貸借對照表原則

1. 完全性의 原則
2. 總額主義

3. 擔保資產의 表示
4. 經費와 損失의 移延
5. 貸借平均
6. 流動性配列
7. 科目分類의 原則

III. 「企業會計原則」과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의 關係

上述한 바와 같이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은 본래 「企業會計原則改正案」으로 내놓았던 것을 學界 및 實務界의 이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高潮되자 實質的인 內容은 변경시키지 않고 名稱만이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以下「規程」이라 略稱함)으로써 大統領으로 分布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學界 또는 實務界의一角에서는 1958年에 成文化된 「企業會計原則」이 「規程」으로 改正된 것으로 誤解하는 傾向마저 나타나고 있다. 誤解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은 理由때문인 것으로 料된다.

첫째, 「企業會計原則」과 「規程」과의 關係가 明瞭하지 않다는 것이다. 「規程」의 名稱이 示唆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이 會計處理를 할 때 따라야 할 指針을 「規程」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規程」도 會計行為를 指導하는 原理(會計原則)에 立脚하여 마련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모든 會計規則이나 會計關係法規는 基本的으로 會計原則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規程」과 「企業會計原則」을 分析해 보면 「原則」과 「規程」이 同一 또는 類似한 內容을 갖는 것이 許多하게 重複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 하나의 例로서 「規程」의 第3條를 보면 「一般原則」이라고 하여 會計處理에 관한 諸原則이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되어 있다. ① 明瞭性의 原則 ② 客觀性의 原則 ③ 真實性의 原則 ④ 重要性의 原則 ⑤ 繼續性의 原則 ⑥ 充分性의 原則 ⑦ 安全性의 原則 ⑧ 資本去來・損益去來 區分의 原則, 이 밖에도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의 重複現象은 거의 全領域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問題點은 우선 「企業會計原則」에서의 一般原則은 무엇이고 또 이 것은 「規程」의 「一般原則」과 어떤 다른 意味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企業會計原則」이 企業이 會計行為를 수행할 때 基本的으로 준수하여야 할 會計行為의 指針을 마련 한 것이라면 이는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이 類似한 內容으로써 二重構造를 가지고 나타나야 할 하등의 理由가 없다. 비록 上場法人에 特別히 적용하여야 할 事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會計의 基本原則내에서 規定되어야 하며 基本原則을 遷脱해서 까지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

므로 「企業會計原則」은 모든 業種의 產業에 公通적으로 適用할 수 있는 포괄성과 融通性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企業會計原則」과 「規程」과는 特定問題를 除外하고는 별다른 差異點을 發見할 수 없다. 「企業會計原則」의 構造를 보면 第1章 總說, 第2章 損益計算書, 第3章 剰餘金計算書와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第4章 貸借對照表 등 4章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反해서 「規程」은 第1章 總則, 第2章 損益計算書, 第3章 貸借對照表, 第4章 資產·負債의 評價 등 4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와같이 全般的 構造에는 어느 程度 差異가 있는것 같아 그 内容을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은 지엽적인 特殊問題를 除外하고는 基本原則에 있어서 다른 점은 없다.

(1) 損益計算書와 관련시켜 볼때 「企業會計原則」은 當期業績主義을 택하고 있는데 반해서 「規程」은 包括主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損益計算書의 樣式은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다.

損益計算書樣式의 比較表

「企業會計原則」	「規 程」
賣出額	× × ×
賣出原價	×
賣出總損益	× × ×
一般管理 및 販賣費	×
營業損益	× × ×
營業外收益	×
當期總損益	× × ×
營業外費用	×
當期純損益	× × ×
賣出額	× × ×
賣出原價	×
賣出總損益	× × ×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
營業損益	× × ×
營業外收益 및 營業外費用	×
經常損益	× × ×
特別利益 및 特別損失	×
法人稅控除前純損益	× × ×
法人稅·住民稅	×
當期純損益	× × ×

위의 損益計算書樣式의 比較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規程」에서는 「企業會計原則」에서의 當期純損益에 該當하는 것이 經常損益으로 되어있고 異常의이고 非反復的으로 발생하는 期間外收益과 期間外費用을 特別利益 및 損失이란 名稱으로 經常損益에 加減하여 法人稅控除前 純損益을 計算하고 있다. 이곳에서 法人稅 및 住民稅를 差減하면 當期純損益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常損益은 當期業績主義 택하고 있는 경우의 純損益概念이고 「規程」에 나타난 當期純損益은 包括主義하에서의 純損益concept이 된다.

우리나라 「財務諸表規則」에서는 營業損益에 營業外收益을 加算하여 當期總損益이란 concept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營業損益에 營業外收益을 加算했다는 것 이 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아 볼 수 없다.

營業外費用과 營業外收益은 본래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생긴 費用·收益을 말하며, 그 내용은 주로 財務活動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그 대부분을 占하고 있다. 財務活動은 企業의 주요한 經營活動을 財務的으로 補助하고 조정하는 活動을 말한다. 營業上의 收益·費用과 營業外의 收益·費用과의 差異點은 그 收益·費用이 企業 본래의 주된 營業活動의 결과로 나타난 收益·費用이냐, 아니면 본래의 營業活動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收益·費用이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서, 이를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 없다. 그러나 營業上의 收益·費用과 營業外의 收益·費用은 다 같이 繼續적이고 反復的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없다.

營業外費用과 營業外收益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對應關係가 없다. 예를 들면, 支給利子는 受取利子를 획득하기 위해서 發生한 費用은 아니다. 그러므로, 營業外收益과 營業外費用과는 아무런 直接的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營業外費用은 營業損益計算에서 計算된 營業利益에 營業外收益을 加算한 전체에 대해서 對應되는 것이다. 이 對應은 賣出額과 賣出原價의 대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期間的으로 一括하여 대응시키게 된다.

이 같은 점에 「規程」에서 當期總損益概念을 除外시킨 점은 會計學의 發展된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財務諸表의 内容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 즉 「企業會計原則」에서는 財務諸表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書類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損益計算書 ② 剩餘金計算書 ③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④ 貸借對照表 ⑤ 附屬明細表 이에 대해서 「規程」에서는 財務諸表로서 ① 損益計算書 ②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③ 貸借對照表 ④ 各附屬明細表의 4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規程」에서는 附屬明細表의 하나로서 資金運用表를 들고 또한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規程을 第5條에 定하고 있는 점은 特記할 만한 일이다.

資金運用表와 財務諸表와의 관련하에서 資金運用表가 어떤 立場에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파크」(Colin Park)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見解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의 見解는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는 財務諸表의 기본이 되는데 대해서 資金運用表는 補足的 資料(supplementary schedule)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見解는 大部分의 會計實務家와 美國公認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가 갖고 있는 見解이다. 둘째의 見解는 資金運用表를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와 同列에 놓을 수 있는 基本的 財務諸表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다. 이 같은 見解는 「매슨」(Perry Mason)의 "Cash Flow" Analysis and the Funds Statement, (Accounting Research Study No.2 196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째의 見解는 資金運用表는 하나의 報告書에 基本的인 短期 財政狀態와 損益計算書上의 活動資料를 포함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基本的 財務諸表(the basic financial statements)가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規程」에서는 資金運用表를 基本的 財務諸表인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에 대한 补足的 書類인 附屬明細表로서 규정하고 있다. 「規程」을 契機로하여 資金運用表를 우리 會計實務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것은 業界에서 資金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는一般的趨勢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多幸한 일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까지 聯結財務諸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歐美諸國에서는 일찍부터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관심이 커다.

聯結財務諸表는 美國의 特殊會社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19世紀末에서 20世紀初에 걸쳐 나타나 점차로 英國·「캐나다」·독일·일본 등 各國으로 파급되었다. 즉, 美國에서는 1933년의 證券法(Securities Act)과 1934年的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上場會社가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할 會計報告書에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 内容에 관해서는 證券去來委員會의 財務諸表規則(Regulatoin S-X)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英國에서는 1945年에 會社法改正을 위해서 組織된 「코엔」報告書(Cohens reports)의 강력한立法要望에 따라, 1948年 會社法(Companies Act, 1948)에서 처음으로 「그룹」財務諸表(group accounts)를 株主總會에 제출할 것이 强制化되었다. 이 「그룹」財務諸表는 원칙적으로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accounts)의 形式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西獨에서는 1965年的 新株式法(Neue Aktiengesetz, 1965) 第3編 第5款에 「콘체른」計算規定(Rechnung im Konzern)을 포함시켜 聯結財務諸表制度를 도입하고, 「콘체른」上位會社는 年度決算書의 決算日에 「콘체른」決算書와 「콘체른」營業報告書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콘체른」決算書의 「콘체른」貸借對照表와 「콘체른」損益計算書는 聯結貸借對照表 또는 聯結損益計算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콘체른」營業報告書와 더불어 經濟監查人이나 決算監查人の 監查를 받도록 諸規則은 요구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國際的으로 그 經濟的 地位가 향상되면서 國際間의 技術提携, 營業協力を 위한 合併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東芝·「소니」·日立製作所 등의 會社가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에 의한 美國의 資本市場으로부터 株式資本을 조달하게 됨에 따라, 여리會社가 이에 同調하여 美國의 證券去來委員會(SEC)의 규칙에 의거한 聯結財務諸表를 「뉴우욕」證券去來所 및 SEC에 提出하게 된 것이 이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었다. 또한, 日本의 高度成長期였던 1964年頃에 上場大會社. 중에서 倒産企業이 나타나는가 하면 粉飾決算이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써 監査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즉, 1965年 大藏省은 企業會計審議會에 대해서 이와 같은 問題에 관한 諮問을 요청하였던 바, 審議會는 1967年 5月에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意見書」를 公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企業規模가 확대되고 大企業이 여러 從屬會社를 支配하는 傾向으로 擴大・發展됨에 따라 聯結財務諸表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같은 새로운 추세에따라 「規程」에서는 證券去來所에 제출하는 財務諸表에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을 규정함으로서 앞으로는 企業이 法律上으로는 각각 獨立된 法人格을 갖고 있으면서도 中心的인 支配意思下에 있는 企業集團에 관한 情報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위에서 밝힌 몇가지 점 이외에는 1958年에 成文化되어 現在 大部分의 企業에서 採擇하고 있는 會計處理에 관한 原則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이와같이 볼 때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의 根本的인 差異가 어디에 있는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 다시말하면 「企業會計原則」에 있어서의 一般原則이나 「規程」에 있어서의 一般原則이 基本적으로 다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財務諸表의 작성에 관한 諸原則에서도 發展된 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企業會計原則」을 改正하지 않고, 「規程」을 제정하여 上場法人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會計處理에 관한 二重構造를 갖게 하기 보다는 「企業會計原則」을 보다 포괄적인것으로 改正하는 한편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해서는 「企業會計原則」의 支配下에서 特別規程을 마련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것이 되지 않을가 한다.

企業會計와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當事者는 여러 集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때마다 相異한 利害關係者集團에 따라 相異한 會計原則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는 會計原則으로서의 基本的 資格을喪失한 것이 되고 있다. 企業會計原則은 어느 特定利害關係者集團을 위해서 制定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모든 利害關係者에게 共通의으로 적용할수 있는 會計行為의 基本原理를 提供한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規程」의 一部는 日本 大藏省 企業會計審議會 第一部會가 昭和 44年에 現行의 日本 企業會計原則에 대한 修正案으로 提出하여 아직 確定되지 않은 것을 우리의 「規程」으로 制定한 것을 볼 때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의 關係가 한층 모호한 감이 든다.

IV.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의 共通的 問題點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이 本質的으로 다른점이 없다고 할 때

이들이 갖는 共通的인 問題點은 무엇일까?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점을 중심으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1) 會計原則 制定의 方法論上의 問題點
- (2) 會計目的 設定上의 問題點
- (3) 「原則」과 「規則」과의 混亂
- (4) 基礎的 諸概念과 測定上의 問題點
- (5) 實質性의 會計原則에 대한 批判

1. 會計原則制定의 方法論的 問題點

會計原則을 制定하는 方法論의 관점에서 볼 때 會計原則은 記述的 會計原則(descriptive accounting principles)과 規範的 會計原則(normative accounting principles)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前者は 한 國家의 會計實務로부터 發達하여 一定의 會計原則의 設定目的에 비추어一般的으로 設定되는 바를 選擇하여 體系化한 것이다. 이와같은 會計原則의 根本적인 형태는 現行의 會計實務를 그대로 體系化한 것이 된다.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記述的 會計原則의 典形의 예가된다.

이에대해서 規範的 會計原則은 慣習으로부터 發達한 現行의 會計實務와는 별도로 순전히 會計가 公正적으로 指向하는 目標를 達成할수 있도록하는 理想的 内容을 갖는 基準이다. 그러므로 規範的 會計原則을 제정하려면 우선 會計가 이루어지는 會計目的 또는 公準을 確定하고 이를 出發點으로하여 會計實務에 具體的으로 적용할수 있는 指針으로서의 會計基準을 演釋的 方法에 따라 論理的으로 유도하게 된다. 1966年에 美國會計學會(AAA)에서 發表한 『基礎的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에 나타난 情報로서의 會計屬性은 規範的 會計原則의 例가 된다.

會計原則을 위의 두 類型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 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어떤 性格을 갖는것일까? 「企業會計原則」은 기본적으로 “企業會計의 實務속에서 발달된 諸原則 가운데서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企業會計原則」이 形成된 方法論上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一般的으로 認定된것을 要約’했다는 점에서 記述的 會計原則의 性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 ‘公正妥當’하다고 하는 判斷基準을 中心으로 한 理論體系를 갖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果然 1958年에 制定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이 당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 實務를 調査하여 이곳에서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것을 要約하였다고 確認할 만한 證據가 있는가? 事實 當時의 우리나라 會計環境은 會計原則을 實務로부터 歸納的으로

導出해 낼 수 있을 程度로 發達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未備된 現實世界(實務界)의 會計業務를 實際로 調查하여 이로부터 우리의 「企業會計原則」을 끄집어 냈다고 하는 具體의 인 證據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의 「企業會計原則」은 우리의 經濟·經營環境이 類似한 이웃나라 日本에서 發達한 會計實務를 우리의 것과 同一한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會計原則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편이 훨씬 事實에 가까운 表現이 아닐까 한다.

여하튼 歸納的으로 導出된 企業會計原則이 갖는 短點은 實務界의 會計實務를 觀察할 때 觀察者가 어떤 現象을 관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고 또 觀察對象이 되는 現象의 적절한相互關係를 파악하는데 어떤 潛在意識의인 觀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觀察을 할 수 있는 충분한 對象이 없는 경우에는 觀察 그 자체를 할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을 제정할 당시의 與件은 充分한 觀察을 할 수 있을 정도로 一般化된 會計慣習이 存在하고 있었느냐에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다. 會計慣習이 충분히 成熟되지 못한 여전하에서 萬一 會計原則을 재정하여 할때 극히 한정된 觀察을 함으로써 中요한 資料에 대한 觀察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이로부터 그릇된 結論에 도달하기 쉬운 短點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會計慣習에 관한 歷史的 遺產을 갖고 있지 못한 國家에서는 會計의 理論的 研究를 통한 會計行爲의 原則을 規範的으로 定하고 理論과 實務와 분가피하게 나타나는 괴리를 現實的으로 타결하기 위한 規則을 제정하기 위한 一連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2. 會計目的 設定에 있어서의 問題點

「企業會計原則」이나 「規程」에서는 다같이 會計의 目的을 設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目的은 「企業會計原則」에서는 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지 않고 또한 「規程」에서는 證券去法에 따라 特定利害關係者를 위한 會計目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妥當性을 잃고 있다.

우선 「企業會計原則」에 나타난 會計目的을 보면 다음과 같다. “企業會計는 財務諸表에 의하여 企業의 經濟的 資產의 發生 消滅과 그에 따라 發生하는 企業에 대한 利害關係의 變화를 忠實히 報告함은 물론 다른 期間과 企業의 財務諸表와도 比較할수 있도록 統一的이고 客觀的으로 定義된 諸原則에 依據하여 處理되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각된 會計目的의 矛盾點은 첫째로 會計를 財務諸表를 작성하는 作業에 局限하여 認識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企業에 대한 利害關係의 變화를 經濟的 資產의 發生 消滅에 구한하여 理解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財務諸表의 比較性을 유독히 強調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會計目的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네째로 위와같은 여러 理由로 말미암아

會計가 어떤 目的을 指向하여 수행되어야 할것인가를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企業會計原則」은 會計目的을 明白히 提示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署列되어 있는 會計의 諸處理의 原則, 즉 一般原則, 損益計算書原則, 貸借對照表原則등이 會計의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어떤 方法으로 處理되어야 할 것인가를 明白하게 알 수 없다.

이에 비하면 「規程」에서 設定한 會計目的은 보다 說得力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規程」에서는 會計目的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上場法人등의 會計는 財務諸表의 利用者가 企業實體에 관하여 올바른 判斷을 행할수 있도록 財政上의 資料를 體系的인 正規簿記의 方法으로 處理하고 이에 관련된 情報를 정확히 把握하여 真實한 報告를 하게 하는것을 基本目的으로 한다.”

「規程」의 會計目的은 會計가 財務諸表 利用者の 經濟的 意思決定에 도움이 되는 情報를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進前된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目的에도 判斷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情報를 마련할때 이것이 財務諸表, 正規簿記의 方法, 真實한 報告등 情報의 效率性을 增大시키는 문제와는 별로 無關한 要件들이 情報를 마련하는 問題와 관련하여 制約要素로 삽입되어 있는 점은 깊이 생각해야 할 問題가 아닐까 한다. 다시말하면 이같은 制約要素들이 果然 會計情報의 有用하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會計는 情報「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다. 會計를 이와같이 볼때 會計는 特定의 計算方法이나 機構를前提로 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은 會計를 마치 正規簿記의 原則(사실 무엇이 正規簿記의 原則인가도 명백하지는 않지만), 真實性의 原則(이에 관해서는 후에 批判함)에 따라 마련된 財務諸表에 국한하여 理解하고 있는것은 會計가 궁극적으로 追求하고 있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認識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볼수있다. 그러기 때문에 「原칙」과 「規程」은 다같이 會計原則의 體系를 實質的으로 一般原則, 損益計算書原則, 貸借對照表原則등 3部로 區分하여 體系化하고 있는 것이다. 會計情報 利用者の 經濟的 意思決定에 有用한 것이 되기 위한 情報는 財務諸表에 국한시킬 필요만은 없으며 또한 特定의 計算機構를 通해서 얻어진 資料에 限定시킬 필요도 없다.

3. 「原칙」 및 「規程」과 「規則」과의 混同으로부터 나타나는 問題點

「企業會計原則」에 대하여 「財務諸表規則」을 그리고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에 대하여는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案)」등이 나와 會計의 基本目的을 보다

具體的이고 現實的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하는 指針이 마련되었다.

會計原則은 모든 企業이 적용가능한 普遍妥當性을 가지고 會計의 基本目標를 達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會計의 重大한 關係文項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會計原則은 特定의 規則(rules)이나 節次(procedure)와도 그 性格과 內容을 달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때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은一部分에 있어서는 會計原則의 性格을 갖고 있는 면도 없지는 않으나 (例：一般原則) 그 상당부분은 商企業과 製造企業을 對象으로한 會計處理에 관한 方法을 규정한 節을 주고 있다. 따라서 「原則」 및 「規程」과 「規則」과의 關係가 애매하여 구분하기 困難하다.

(4) 基礎的 諸概念과 測定上의 問題點

會計는 基本的으로 測定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은 概念上의 問題와 測定의 問題는 嚴格하게 區分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企業會計原則」과 「規程」에서는 資產, 負債, 資本, 收益, 費用 등 基本的 會計諸概念을 定義하지 않고 그 測定問題로서 概念을 規定하려고 한 면이 많이 있다. 이와 아울러 諸概念의 屬性을 定義하지 않고 外形的인 形態로서 特定概念을 說明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도 있다. 예컨 營業外費用과 營業外收益을 定義할 때 營業外費用과 收益이 基本的으로 어떤 性格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에 力點을 두기 보다는 이를테면 “營業外 收益은 收入利子 및 割引料有價證券處分益”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銀行業을 하는 企業에서 收入利子 및 收入割引料는 營業外收益이 아니라 本來의 主된 營業活動으로부터 얻어지는 收益이다. 또한 證券會社의 證券處分利益은 營業外收益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점들은 「原則」과 「規程」의 基礎的 諸concept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인 것이다.

(5) 實質性의 原則과 그 問題點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기본적으로 “企業會計의 實務속에서 발달된 諸原則 가운데서一般的으로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會計原則이 形成된 方法論上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것을 要約’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實用主義的 立場에서 會計慣習으로부터 歸納的으로 도출한 實踐規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公正妥當’하다고 하는 判斷基準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中心으로 한 理論體系를 갖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企業會計原則」의 一般原則 第1原則으로서 實質性의 原則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實質性의 原則을 제외한 나머지 8 가지 原則은 實質性의 原則를 실현하기 위한 副次的인 諸原則으로 理解하는 것이 오늘날 一般的인 見解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

리 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最高의 目標는 真實性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真實性(truthfulness)이란 무엇인가? 이 真實性이란 말을 會計에 적용시킬 경우, 이것은 상당히 複雜한 概念이란 것을 알 수 있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真實性이란 말을 ‘事實에 立脚한’(in accordance with the facts) 것으로 解釋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事實’(facts)에 관한 解釋은 결코 일정하지 않다. 或者는 客觀的이고 檢證可能한 證據를 갖는 資料를 事實로 理解하여 歷史的 原價를 會計上の 事實로 해석하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真實이란 말을 資產이나 費用을 現在價值로 評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맥닐」(Kenneth MacNeal)과 같은 사람은 資產을 時價에 의해서 評價하고, 또 價值의 變動으로부터 생기는 損益을 명료하게 表示하는 경우에만 財務諸表는 真實한 것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見解와 아울러 우리 나라와 日本에서는 이미 형성된 會計原則을 준수하는 경우에 真實性이 保障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으로 會計問題와 관련하여 真實性의 原則를 論議한 것은 獨逸의 商法學者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真實性의 原則(Grundsatz der Bilanzwahrheit)은 貸借對照表에 記載하는 財產의 評價에 관한 原則이었다. 이것은 一定時點에 企業이 所有하고 있는 모든 資產과 負債를 빠짐없이 完全히 貸借對照表에 記載함과 동시에, 이를 真正한 價值로 評價하여 표시할 것을 要求하는 原則이었다. 그러므로, 貸借對照表 真實性의 原則은 貸借對照表에 記載될 수 있는 能力を 갖는 모든 財產(資產과 負債)을 빠짐없이 記載할 것을 要求하는 完全性의 原則과 財產의 評價에 있어서 客觀的인 真實性을 要求하는 真正價值의 原則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日本에서는 이상과 같은 獨逸 商法學者들의 見解에 대하여 會計學의 입장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즉, 獨逸 商法學者들의 見解는 根本적으로 評價問題와 관련하여 볼 때, 財產法의 입장에서 그의妥當性이 있다고 主張하고, 會計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는 正規簿記의 原則에 따라 損益計算의 結果로서 貸借對照表가 作成되는 것으로 이해 한다. 이와 같이 貸借對照表는 正規簿記의 原則에 따라 每期의 利益을 算定한 결과로서 이해하게 되면, 法的 觀點에서 말하는 財產을 網羅的으로 記載할 수 없어 簿外資產이 생기고, 또 모든 財產은 時價에 의해서 評價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複式簿記에 의한 損益計算과 財產計算의 機構는 몇 가지의 基本的 假定(公準)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證明可能한 真理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會計學에서 말하는 真實性의 原則은 앞에서도 말한 ‘事實과 表示와의 一致’를 意味하는 것

이 아니고 9가지의 一般原則에서 真實性의 原則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의 原則이 준수되었을 때, 真實性의 原則이 준수되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그러므로, 會計學에서 말하는 真實性의 原則은 絶對的인 의미에서의 真實性이 아니고 ‘合意에 의한 真實’(truth by consent)이며 또한 ‘慣習에 의한 真實’(truth by convention)이라고 하고 있다. 真實性의 原則을 이와 같이 解釋하면, 예컨대 資產을 賣却한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利得을 認識하여 報告하는 것은 真實한 狀態를 報告하는 것으로 보나, 販賣 이전에 增加된 資產價值를 增額評價하여 報告하는 것은 真實性에 反하는 것으로 解釋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判斷基準은 현안의 문제에 관해서一般的으로 認定된 어떤 慣習과 默約이 있느냐 하는 점을 갖고서 真實性의 어부를 判斷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企業會計原則」에 있어서의 真實性을 이상과 같이 解釋하면 本來의 意味에 있어서의 真實性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財務諸表에 報告된 真實性은 적용된 原則 그 自體가 本質적으로 타당한 根據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財務諸表를 작성하기 위해서 會計에서 적용되는 諸原則은 어디까지나 人間이 만들어 낸 社會的 制度로서 行爲基準으로서의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性格을 갖는 會計原則의 最高目標를 真實性이란 말로 表現하면, 이것은 真實이 아닌 虛偽가 되고 만다. 筆者の見解로서는 真實은 ‘合意’나 ‘慣習’ 또는 ‘默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또 社會的 慣習을 가지고 真實性을 論한다고 하는 것은 意味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會計行爲가 반드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慣習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經濟的 意思決定을 하기 위한 真實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라는 넓은 뜻으로 解釋하여 볼 때, 이 真實性은 그 나름대로의 意義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真實性은 主觀的 判斷에 크게 左右되기 쉽다. 真實性은 財務諸表 最高의 目標로 삼는데 대한 다른 또 하나의 疑問은 財務諸表가 利害關係者에게 情報傳達의 手段이 된다고 하면, 事實의 意미로서의 真實한 情報가 과연 얼마나 利害關係者の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真實한 財務諸表라 하더라도 이것이 각종의 利害를 달리하는 關係者들의 意圖된 目的에 적합하게 使用될 수 없다고 하면, 會計情報(財務諸表)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近年에 美國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會計情報理論에서는, 財務諸表의 情報價值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目的適合性의 基準(standard of relevance)을 會計의 最高目標로 삼고, 이에 관한 研究가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李海東・李秉彥 共著「財務諸表規則解說」一潮閣, 1959年
- (2) 企業會計準則制定 分科委員會, 「企業會計原則」, 「財務諸表規則」, 1958年
- (3) 企業會計制度審議分科委員會「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 1974年
- (4) Sanders, Hatfield and Moore, *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1938.
- (5)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 (6) W.A. Paton and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monograph No. 3, 1940.
- (7) Kenneth MacNeal, *Truth in Account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39).
- (8)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 1966).
- (9) Howard J. Snavely "Accounting Information Criteria" *The Accounting Review*, 1967.
- (10) AICPA, *APB Statement* (Commerce Ceearing House, Inc., 1973).